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1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윤경원	710921-*****	경기도 양주시 삼승로38번길
최영은	520518-*****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64번길
김명자	67042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최병주	60080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윤에덴	801001-*****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공유식	81081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오창호	74082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윤경원	2018.7.31. '(무)□□□□□□□□□□보험Ⅲ' 1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으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과태료 20만원

처분 대상자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최영은	2018.5.4.~2019.5.17.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1804.20)' 등 331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41백만원)을 (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16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67백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9.2.18.~2019.5.3.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1901.2)○○○○○1종(○○○○○)' 등 45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4백만원)을 (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9백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과태료 3,500만원
김명자	2018.7.5.~2019.5.2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1804.20)' 등 165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17백만원)을 (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15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05백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과태료 3,500만원
최병주	2019.1.11.~2019.5.28.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1901.22)' 등 120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13백만원)을 (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8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48백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9.3.22.~2019.5.2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주식회사의 '○○○○○○○○○○○○○○○○○○○○○○○○○○○○○○' 등 21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2백만원)을 (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0백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과태료 3,100만원
윤에덴	2018.5.31.~2019.3.2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주식회사의 '(무)○○○○○○○○○○_○○○○○○○○' 등 12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5백만원)을 (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6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41백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과태료 1,330만원
공유식	2018.1.23.~2019.5.13.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주식회사의 '○○○○○○○○○○○○○○○○○○○○○○○○○○○○○○' 등 6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3백만원)을 (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32백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과태료 840만원
오창호	2018.5.30.~2018.6.28.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주식회사의 '(무)○○○○○○○○○○_○○○○○○○○' 등 5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3백만원)을 (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33백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과태료 700만원

나. 유의사항

□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 2월 1일까지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관보 공고일로부터 2월 1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나,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